

#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56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 II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도 수입계획 변경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증액(증 1,625백만원) 및 보조금 반환수입 33백만원, 기타 이자수입 519천원을 수입계획에 신규반영하고자 함
- 나. 2025년도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(증 1,018백만원) 및 신규사업을(① 해외도시 물품나눔 사업 50백만원, ② 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250백만원) 편성하고자 함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역

○ 수입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'25년 당초 계획(A)	'25년 1차 변경	'25년 2차 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<b>합 계</b>	<b>6,252,894</b>	<b>6,252,894</b>	<b>7,911,176</b>	<b>1,658,282</b> (26.52%)
<b>216 이자수입</b>	<b>216,487</b>	<b>216,487</b>	<b>217,006</b>	<b>519</b> (0.24%)
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216,487	216,487	216,487	-
216-03 기타이자수입	-	-	519	519
<b>223 보조금반환수입</b>	<b>-</b>	<b>-</b>	<b>32,848</b>	<b>32,848</b>
223-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-	-	8,474	8,474
223-03 위탁비반환수입	-	-	24,374	24,374
<b>714 예치금 회수</b>	<b>1,472,185</b>	<b>1,472,185</b>	<b>3,097,100</b>	<b>1,624,915</b> (110.37%)
714-01 예치금회수	1,472,185	1,472,185	3,097,100	1,624,915
<b>721 전입금</b>	<b>4,564,222</b>	<b>4,564,222</b>	<b>4,564,222</b>	<b>-</b>
721-03 기타회계전입금	4,564,222	4,564,222	4,564,222	-

○ 지출계획 변경내역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 (정책/단위/세부)	'25년 당초 계획(A)	1차 변경	2차 변경 (B)	증감(B-A) (증감률)
<b>합 계</b>	<b>6,252,894</b>	<b>6,252,894</b>	<b>7,911,176</b>	<b>1,658,282</b> (26.52%)
<b>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</b>	<b>4,541,834</b>	<b>4,881,834</b>	<b>5,181,834</b>	<b>640,000</b> (14.09%)
외국지방정부 공무원교육 및 연수	2,618,334	2,818,334	2,818,334	200,000 (7.64%)
시석 사 립 과 대정	967,360	947,126	947,126	△20,234
공초 청 무 연 원수	426,522	426,522	426,522	-
도초 시청 철교 도육	68,525	68,525	68,525	-
시최 고 립 위 과 대정	290,777	311,011	311,011	20,234
유 학 생 유 치	865,150	905,150	905,150	40,000
서네 트 워 크 인 재 로 유 치 션	-	160,000	160,000	160,000
<b>외국 지방정부 문화 등 교류</b>	<b>1,523,500</b>	<b>1,663,500</b>	<b>1,963,500</b>	<b>440,000</b> (28.88%)
소인 프 방 라 안 구 전축	152,500	152,500	152,500	-
서철텔 올 형 린 O D A 지	800,000	940,000	940,000	140,000
민 간 국 제 개 발 협 력	571,000	571,000	571,000	-
해물 외 품 도 나 시늬	-	-	50,000	50,000
스국 마 제 개 트 발 시 협 티력	-	-	250,000	250,000
<b>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</b>	<b>400,000</b>	<b>400,000</b>	<b>400,000</b>	<b>-</b>
재 해 구 호	400,000	400,000	400,000	-
<b>행정운영경비(기본경비)</b>	<b>5,000</b>	<b>5,000</b>	<b>5,000</b>	<b>-</b>
<b>재무활동(예치금)</b>	<b>1,706,060</b>	<b>1,366,060</b>	<b>2,724,342</b>	<b>1,018,282</b> (59.67%)

※ 1차 지출계획 변경 : 정책사업비(비용자성사업비, 인력운영비) 340백만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감액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####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의견<sup>1)</sup>

- 서울특별시는 지난 '05년도부터 ①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와 ②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를 조성·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을 운용한 바, 지난 '24년 7월, 별도 조례를 신설하여<sup>2)</sup> **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**을 운용하고 있음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16억 2,400만원 증가하고, 당초 수입계획되지 않은 **보조금반환수입** 3,200만원을 수입계획함에 따라
  - 수입계획과 연동되는 지출계획도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글로벌도시정책관 국제협력담당관)**에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재원중 10억 1,8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**이 지출계획한 사업내용에 6억 4,000만원을 증·감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

1)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2) 「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(제정 및 시행 : 2024. 7.15)

##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3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여유자금 예치와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증·감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
  -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은 당초 지출계획(17억 600만원)보다 59.7%, 10억 1,8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  - 그러나 다른 정책사업인 **국제개발협력사업추진**의 경우, 2개 세부사업의 개별 사업내용을 감액,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당초 지출계획(45억 4,100만원)보다 14.1%, 6억 4,000만원 증액되는 것이기에 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은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다른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에 일부 증액하여 지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운용중인 동 기금에 대한 수·지 균형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
  - 아울러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동 기금의 용도<sup>4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4) 「서울특별시국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·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조사사업 및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자금지원
2. 외국도시의 재해·재난에 대한 구호사업경비의 지원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